#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(융자)

세부사업명	농가사료?	딕거래횕	활성화지원( <del>{</del>	융자)		세드	<del>-</del>	융자금
내역사업명	사료구매기	사료구매자금 예산 (백만원) 336,150						
사업목적	감안히	○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,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축산농	○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축산법	제3조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* 기존 시	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*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*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.추천 가능						
지원한도	○ 농가당	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						
<b>재원구성</b> (%)	국고		지방비		융자	100	자부담	
							(단:	위 : 백만원)
연도별 재정투입	연도	2	2016년	2017년		2018년		19년
현황	융자 	4	50,000	420,000	3	380,000	336	5,150
담!	당기관		담!	당과	담!	당자	연	락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양재욱					대욱	욱 044-201-2360		
신청시기	연초 <b>사업시행기관</b> 농림축산식품부, 시·도(시·군)							
관련자료	'19년 농기	'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 계획						

# <u>'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</u>

- ★사업비: '19년 336,150백만원
   '18년 대비 '19년 예산액을 고려 예산 우선 배정

   \* 시도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유보액 및 집행잔액 시ㆍ도별 조정 예정

   자금용도: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

   지원조건: 융자 100%, 금리 1.8%, 2년 일시상환
   \* 사료 범위: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·배합·보조사료(TMR, 조사료 포함)
- □ 지원대상 :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  - \*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(농가별 한도내)
  - \*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·추천 가능 < 제외자 >
    - ① 농협 임직원·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    -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    - ③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
      ['18년~'19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(단,
  - ④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, 벌금, 과태료, 인증·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

- 대상법령 : 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악취방지법, 사료관리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, 동물보호법
-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
  - i) 징역, 벌금 : 4년('15.1.1. 이후)
  - ii) 과태료, 과징금, 영업정지 : 2년('17.1.1. 이후)
  - iii)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, 인증·지정 취소 : 1년('18.1.1. 이후)
  - \*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: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- □ 지원축종 : 한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오리, 기타 가축\*
  - \* 사슴, 말, 산양, 토끼, 메추리, 꿩, 타조, 꿀벌(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)
- □ 대출기관 : 지역농협·축협 / 시행주체 : 지자체
  - \* 단, 한우조합연합회 소속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(참여 한우조합)에서 주관

#### □ 농가 지원금액

- O 농기당 지원한도 $^{1}$ 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$^{2}$  지원
  - \*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(상환예정금액) 차감 후 지원(Q&A 9번 참조)

#### □ 우선순위

- 1. 영세농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)
- 2.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)
  - \* 다만,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.

- 3.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(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)
  - 낙농 및 한우 OEM 사료 사용 농가 제외
    - \*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(http://www.ekapepia.com), 생산비는 '17년 통계청 자료 기준(별표 3)
    - \*\* 양계농가는 자조금 납부 우수농가에 한함(① 전액 납부자 ② 부분 납부자(70% 이상)
- 4.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
  - ①「동물보호법」제2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에 따른 인증 농가
  - ② '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'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를 준수농가
    \* '18.9.1. 시행(0.05→0.075㎡/수)
- 5. 청년창업농
  - \*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
- 6. 대규모농 미만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)
- 7. 대규모농(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)
  - \* 영세농(준전업농 미만): 소 16마리, 돼지 333, 양계 10,000, 오리 1,666 미만
  - \* 대규모농 : 소 150마리, 돼지 3,000, 양계 90,000, 오리 15,000 이상

## □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

- O 연간 3회 분산 신청·선정: 3월(60%), 6월(30%), 8~10월(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)
  - \* 선정ㆍ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, 대출은 '19.12.31일까지 실행
  - \* 연초에 60% 초과 선정 금지, 60% 초과 선정한 시·군은 '19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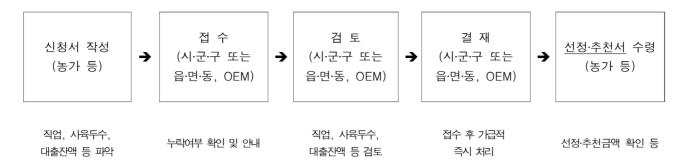
#### □ 지원 전제조건

- O 한우조합연합회 소속 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 시행주체(생산자단체)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(한우에 한 함)
  - \*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. 다만,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,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

#### □ 기타

- ① 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.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, ②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 시까지 신청자 문제로 미대출의 경우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(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)
  - ► 포기 및 미 대출액(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)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·추천 가능
- 시·군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
- 사업대상자 선정·추천 시·군과 대출 실행 시·군 일치
  - ▶ 선정·추천받은 시·군에 소재한 지역농협·축협에서만 대출 가능
  - \*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·군에서만 대출 가능
  - ► 단, 해당 시·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·군(또는 OEM 시행주체)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
  - \*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·축협은 해당 시·군에 대출내역 통보
- O 대출금은 지역 농·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

# O 자금 신청 및 선정·추천 절차



# [별표 1]

# <u>시·도별 예산배정 내역</u>

(단위 : 억원)

시.도	'19년도 배정액	선정·추천 가능액	'16년도 지원액	'17년도 지원액	'18년도 지원액	비고
서 울	0	0	1	0	0	
세 종	16	24	15	18.5	20	
부 산	2.7	4.05	3	0	3	
대 구	4.6	6.9	10	18.5	17	
인 천	23.4	35.1	32	30	33	
광 주	0	0	2	0	0	
대 전	0	0	3	2	1	배 정 된
울 산	12	18	18	16	30	예 산 의
경 기	441	661.5	657	630	552	1.5배까지 선정·추천
강 원	167	250.5	239	202	199	
충 북	176	264	257	240	226	(선택 사항)
충 남	446	669	674	677	573	
전 북	368	552	550	520	457	
전 남	314	471	542	450	449	
경 북	514	771	754	734	645	
경 남	268	402	405	384	345	
제 주	94	141	188	118	105	
OEM (한우조합 연합회)	113	169.5	150	160	145	
유보액	401.8					
계	3,361.5	4,439.55	4,500	4,200	3,800	

<sup>\*</sup> ① '18년 예산 대비 '19년 감액 비율, ② '18년도 실집행율을 고려(80%이하 차등 감액, 90%이상 증액)하여 산출

#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

(단위 : 천원)

구	분	농가당 지원한도	마리당 지원단가	전제조건	비고 (금리 및 지원조건)
한육우	일반	600,000	1,360		1.8%, 2년 일시상환
Ŭ 4 T	구제역	900,000	2,040	해당없음	"
나노	일반	600,000	2,600	ᄱᇰᆹᆷ	и
낙농	구제역	900,000	3,900		"
양돈	일반	600,000	300	해당없음	п
0년	구제역	900,000	450	에 O 따급	"
양계	일반	600,000	12		и
071	Al	900,000	18	해당없음	"
오리	일반	600,000	18	ᄱᇰᆹᆷ	и
エ니	Al	900,000	27		"
사슴	일반	90,000	900		и
말	일반	90,000	1,050		и
산양	일반	90,000	180		и
토끼	일반	90,000	12	케다어ㅇ	и
메추리	일반	90,000	6	해당없음	И
꿩	일반	90,000	12		11
타조	일반	90,000	300		11
꿀벌	일반	90,000	150		11

- \* 구제역 및 AI: '15 ~ '19년 피해 농가[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(살처분 농가 포함)]
- \*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(소, 돼지, 닭, 오리)도 농가당 지원 한도의 1.5배까지 지원 가능
- \* 각 시·도(시·군)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

### [별표 3]

# 축종별 생산비 및 축산물 가격

축종	생산비*	축산물 가격**	<b>비고</b> ('19년 1월 가격 <b>)</b>		
<b>한우비육우</b> (단위 : 원/100kg)	1,017,830 (16,417원/지 육kg)	한우 등외제외(거세) 평균 경락가격	· kg당 지육가격 으로 환산 (18,552원/kg)		
<b>육 우</b> (단위 : 원/100kg)	656,189 (10,584원/지 육kg)	육우 등외제외(거세) 평균 경락가격	· kg당 지육가격 으로 환산 (11,389원/kg)		
<b>비육돈</b> (단위 : 원/100kg)	283,648 (3,698원/지 육kg)	탕박(등외제외), 제주 제외 가격	· kg당 지육가격 으로 환산 (3,241원/kg)		
<b>계 란</b> (단위 : 원/10개)	1,117	산지가격 (특란 30개)	· 30개 단위를 10개로 환산 (795원/10개)		
<b>육 계</b> (단위 : 원/kg)	1,237	생계유통가격 (규격:대)	· 생계(대:1.6kg) 유통가격 (2,069원/kg)		

<sup>\*</sup> 생산비는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('17년) 기준이며, '18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시 '18년 기준을 적용('19.5~6월 발표 예정)

<sup>\*\*</sup>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월 평균 가격 기준

# <u>사 업 신 청 서</u>

신	① <b>성</b> (법	인명	명 )			② <b>생</b> (법인등	<b>년월일</b> 등록번					③전호 번호		)	_
청	<b>④주</b> (도로명	주소	<b>소</b> 기재)										•		
자	⑤직		업	[직업 및 직	  장명을 ㅎ	<b>⑥ 직</b> 위로 기재함		<b>명</b> 불금 회수	- 등 제지	대가 있습	:니다 <u>.]</u>	⑦전호 번호		)	_
	⑧농	장	명									⑨전호 번호		)	_
	<b>⑩소</b> (도로명		<b>지</b> 기재)												
신	①축		종	[ ]한 [ ]말	우 [ [	]육 우 ]산 양	[ ] <u>=</u>	ᅷ농 │ 툰끼 [	[ ]임 ]메	냥 돈 ║ 추 리		냥계 [ ]꿩 [	]오리 ]타 3		]사 슴 ]꿀 벌
청	<b>⑫사</b> (신청)		\	[사육두수	를 허위로	기재할 경	영우 대출금	금 회수 등	등 제재기	가 있습니	- - 	① 면 면 전		동	m²
내		만원	[]	대출	글액 :				다	출잔	액 :				
용		만원	()	[농가당 지	원한도에	<b>!</b> 서 기존 다	<b>백 만 원</b>  출잔액(싱	<b>(대 출</b> 남환예정금	<b>신청</b> [액) 차	<b>농</b> • 감 후 마	<b>축협</b> 리당 지	<b>:</b> 원단가를 7	ᅨ산해서	신청ㅎ	<b>)</b>  세요]
	⑯사· (거리					신규	사료구	- 매 (	), 기	존 외	l상금	액 상환	발( )		
	①フ											축산계	열화	농기	<b>l</b> ( )
놀	릵춬( 커래	나식 활성	풄붓	·야 재  원사입	정사업 법을 진	관리 7 1 정합니	기봉규 1다.	정 제	26조	제1항	의 ㅠ	정에 9	의하여	농	가사료
_	증빙/		: 1.	거강별	보험자:	격득실.	확인서	1부				$ \rightarrow$ $\star$		4 H	
			2. 3.	숙산일 신용2	일(가죽 E사서	사육입 1부(14	) 허기 번의	·중 또 상환역	든 기  정급	·숙사 액이	육업 있는	등록증 농가어	사본   한힘	1 두 -)  -	
			4.	사료 <sup>.</sup> 계열:	구매 화농가	계 약 서 ) 1부.	또는	사료	. ᆉ매	영수	r음(/	기존 외	상금	객 <sup>C</sup>	해당분,
			5.	사료 영수	첨가 증은 제	계약서 ) 1부 미생물   외, ㅈ	제재 <sup>-</sup>  자체	구매영 지원의	수증( 의 경	(연중 우는	공급 지원	농가민 자료로	난 해딩 일 갈음	¦하□ 음)	후 간이
						20	19년	월	ç	일					
										신청	자		(서 명	또	는 인)
(E	아업 1 등에	신청 보여	과	관련하 진언전	여해 네보면	당 지지 I 구매	ᅡ체에 내영 -	서 세· 등은 :	무서 조히	및 = 하는	국민간 거에	강보험 동의합	공단,  니다	삼.	료업체
20	본인원	은 눈	5 협	임직원	l·공무	원·교시	나, 공기	기업 등	등 정	부투제	다 및	출연기			다 등이
<b>2</b> 1						∥약직 사식∶						니다.	$\neg$		
	본인원	≘ =	구가동	동물질병	병관리	시스템(	KAHIS	3) 질병	발생	정보	년 조회	에 동의	_  하며,	'17	년부 <u>터</u>
63												ㅏ임을 : 른 부딩			
6	확인	된 [	대 에	는 관기	ᅦ규정	에 따라	라 대출	불금 호	수	및 위	약금	리 부과	, 지원	제한	난 등을
2	말을 92018.			¦을 확' 까지 [			못할	경우	선 정	! O  =	취소되	티고, 0	의를	제 :	기 하지
	않음	을 홈	확인	합니다	. 🗆							•		-	
<b>(</b> £	) 상기	(Ta)	~ 62	# ^r &	에 내	णप ट	5의 홍	: 사일	4 AF 1	신청		인합니		! 또	는 인)
(	)	人	장	• 군	수 .	자치	구청	상	-1·						
(	)	핟	-우	조 합	장				귀하						
`			-												

#### <작성 요령>

- ▶ ①성 명 : 농가는 개인의 성명,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.
- ▶ ②**생년월일** : 농가는 생년월일.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③전화번호 :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.
- ▶ **④주** 소 :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⑤ **집** :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"축산업"이라고 적으세요
- ▶ ⑥ **직 장 명** :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"농장명"을 적으세요
- ▶ ⑦전화번호 :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**⑧농 장 명** : 농가는 개인 농장명,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.
- ▶ **⑨전화번호** :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
- ▶ **10)소 재 지** :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①축 종 :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"O" 표시를 하세요.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.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.
- ▶ ⑫사육두수 :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.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
- ▶ **③사육면적** :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
- ▶ (4)기 지원현황 :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.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"대출잔액증명서"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
  - 지원년도 :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.
  - 사업명: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.
  - 대출금액 :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.
  - 상환금액 :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
  - 상환 예정금액 :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
- ▶ ⓑ 신청금액 :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·축협을 적으세요. 단,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.
- ▶ **ⓑ사용용도** :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"O" 표시를 하세요.
- ▶ **(17)기타**: 해당 구분에 "○"표시를 하세요.
- ▶ **⑱증빙서류** : 직업, 사육두수,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.
- ▶ ① ~ ②동의 및 확인사항 :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"□"란에 "V"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.

# <u>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·추천 통보서</u>

-11	① <b>성</b> (법인	<b>명</b> [명)		<b>②생년월일</b> (법인등록번호	<u>ā</u> )		③전화 번호	( )	_			
대 상 자	<b>④주</b> (도로명 주	<b>소</b> <sup>[</sup> 소 기재)					⑤축 산 업 등록번호	<생륵	<i>탁가능&gt;</i>			
	⑥직	업	<생략가능>	①직 장 명	<b>4</b>	생략가능>	<ul><li>8전화 번호</li></ul>	( )	- <i>キント능&gt;</i>			
	⑨농	장 명		<생략가능	<del>5</del> >		⑩전화 번호	( ) <생략	- <i>キント능&gt;</i>			
	<b>①소</b> (도로명 주			<i>&lt;생략가능&gt;</i>								
선	⑫축	종	[ ]한우 [ [ ]말 [		_	]양돈 [ ] ]메추리 [	양계 [ ] ]꿩 [ ]	오리 [ 타조 [	]사 슴 ]꿀 벌			
정 내	<b>③사</b> 육 (신청일			<i>'축종별 반드/</i> 의 허가 및 등록기준			(l) 사육면적	동 <i>&lt;반드시</i>	m²			
용	⑤기 ㅈ (백 민		대출금액 :	배출금액 : 대출잔액 :								
	(16선정 금' (백민	앤	[선정·추천금액은 농	백 만 원 (대 출신 청 농 · 축협 : ) 정 · 추천금액은 농기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(상환예정금액)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 · 추천하세요]								
	⑪사용 (거래			신규 사료구	매()	기존 외상	금액 상환(	)				
	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자로 선정·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2019년 월 일											
	( ) 시장・군수・자치구청장 [직인] ( ) 한우조합장											
<u>유</u>	※ (18대상자(농가 등)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·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,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,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□											
						대상자	(.	서명 또	는 인)			

#### <작성 요령>

- ▶ ① ~ ④ :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.
- ※ ⑤ ~ ①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,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.
- ▶ ⑤**축산업등록번호** :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.
- ▶ ⑥**즤 업 :**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
- ▶ ①직 장 명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. 신청자가 직장 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"가족관계등 록부"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 셔야 합니다.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(8) ~ (11):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.
- ▶ ⑫축 종 :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.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·추천이 곤란합니다.
- ▶ ③ **사육두수** :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,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
  - \* 축산업등록증 면적 / 축종별 기준면적 = 계산두수
  -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
  -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.
- ▶ **⑷사육면적** :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
- ▶ ⑤기 지원현황 :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
- ▶ **ⓑ선정·추천금액** :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.
- ▶ ① 사용용도 :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・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⑱확인사항 : 사업신청서의 동의 및 확인사항은 "□"란에 "V"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시고, 선정·추천 통보서의 확인 사항도 대상 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"□"란에 "V"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세요.
- ▶ 기타 :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·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.

#### [별지 제3호 서식]

# 신 용 조 사 서

1. 신기	청자	인적	사항	및	신청	내	용
-------	----	----	----	---	----	---	---

( 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	전화번호		
생산자단체 등		/	사업자등	·록번호		대표자		
회사ㆍ기타명칭			(생년월	월일)		(성명)		
신청사업명	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		대 출		자담	

### 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부도 또는 다	내위변제사실	신용상태	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ਸ	무	양호	보통	불량

### 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			천원		
신용보증					
後取담보					
先取담보					

※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"대출신청자료에" 의함

# 4. 종합의견

- 사료구매자금대출현황(금차 추가. 사료구매자금대출용 항목 선택 시 활성)

	대출잔액	(	)시구	·지부장	(01)
앙폭	- 선택 시 활성) 	(	)협동	조합장	(인)

녆

월

잌

대출금액	대출잔액
천원	천원

'19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(Q&A)

# '19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 질의응답서(Q&A)

#### Q1. '19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얼마인가요?

- '19년도 예산은 총 3천3백61억원이고, 각 시.도별 배정금액 2천9백61 억원으로 '18년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.(별표 1 참조)
- 유보액 400억원은 시도별 실제 대출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.

#### O2. 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?

-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두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(둘 이상의 사료공장 이용 가능).
-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주셔야 하고,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(채무 변제확인서) 등이 있어야 합니다.

### Q3.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?

-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(이자 제외)가 해당됩니다.
- 그리고, 실제 사료 구매에 따른 대출금도 해당됩니다.
  - 이때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인지 여부를 명확히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고, 지원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. [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]
-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
-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
  - \* 위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
  - \*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에서 현금 입출금 거래(무통장입금증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 등)는 인정 곤란
  - \*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곤란.

#### O4. '19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'19년도 지원조건은 금리는 1.8%,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입니다.
- '14년에 비해 금리는 1.2% 내려갔고 상환기간은 동일합니다.

#### Q5.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.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·추천이 가능합니다.
  - 단, 말, 토끼,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, 오리, 메추리,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(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)
- O 아울러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농협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 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.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합니다.

### O6.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 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- 단,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- 가축을 사육해서 납품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모호한 면이 있고, 농신보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서 발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#### O7. 지원축종에 기타 가축이 포함이 되나요?

- 지원축종은 한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, 오리 이외에도 사슴 등 8종의 기타 가축도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- \* 기타 가축 : 사슴, 말, 산양, 토끼, 메추리, 꿩, 타조, 꿀벌

#### Q8.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?

- O 해당 시.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'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- 단,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

#### O9. 농가당 선정·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?

-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<sup>①</sup>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<sup>②</sup>, 농가 희망금액<sup>③</sup>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.
- (예) 사육두수×지원단가 = 5억, 지원한도 6억, 대출잔액 2억, 희망 금액 5억원인 경우
- O ① 3억, ② 4억, ③ 5억으로 선정·추천금액은 3억입니다.
  - \* 대출잔액 : '08~'09, '13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, '14~'18년 농가직거래활성화자금

#### O10.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.
-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농가 등이 신청할 경우 영세농 등을 우선 선정·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미 지원자, 부분 지원자,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(대출금액)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  - \*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,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,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.
  - \* 반면, 선정・추천금액은 "대출잔액"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
- Q11.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·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?
- O 한육우 등 축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·추천 및 대출도 가능합니다.
- Q12. 농가 선정·추천한도를 융자재원의 1.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?
- 농가를 선정·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(자율) 예산의 1.5배 이내에서 증액해서 선정·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- 1.5배 증액해서 추가 선정·추천하는 것은 포기금액 및 미대출금액 등 발생 시 다른 농가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, 1.5배 증액은 시.군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.5배 증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미 대출된 금액을 다른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#### O13. 농가 선정·추천한도를 1.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가요?

○ 그동안 대출 실행율('13년 75%, '14년 67%, '15년 84%, '16년 87%, '17년 81%, '18년 88%)이 오르고는 있지만,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# O14.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요?

- O 시.군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.
- 즉, 사업대상자는 시·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.5배 범위내에서 선정·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·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·추천 또는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(시.군별 배정액)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# Q15.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'14~'18년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,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(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)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.
- O 또한, 선착순 대출을 실행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.

# Q16.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?

- '14~'18년도 대출실행률이 평균 81% 정도이고 '19년 예산 범위 내이 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- 지역별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시군/시도별 전수배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,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겠습니다.

- Q17. 시·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·추천해야 하나요?
- 시.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1.5배 이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·추천하시면 됩니다.('19년도 시.군별 선택사항임)
- 즉, 농협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, 사육두수,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·추천하시면 됩니다.

### Q18.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,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?

- '19년도에는 지원대상 중 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.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, 사료관리법, 동물보호법,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자도 지원대상 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.
- 아울러,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·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.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.
- Q19.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?
- O 매월 단위로 대출현황을 체크해서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Q20. 사업대상자 선정·추천 시·군과 대출 실행 시·군을 일치시킨 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?
- '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·추천 받은 시·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'14년부터는 선정·추천 받은 시·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.
- 시·군에서는 농가 및 농·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O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·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·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,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Q21. 선정·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O 선정·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.
-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·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.

#### O22. 해당 시·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O 해당 시·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·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농가는 해당 시·군에 소재한 농·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시·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Q23. 해당 시·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?

- 타 지역에 소재한 농·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·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·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  - \* 본인 명의의 주택,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
- O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·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.
-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,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- Q24. 타 지역에서 선정·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·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?
- O 해당 선정·추천 시·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.

#### Q25. 사업신청 및 접수, 선정·추천,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- '19년 2월부터 예산을 농협은행(지역 농·축협)에 배정할 계획이므로 시.군에서 선정·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.
- 각 시.군별로 3회(3월, 6월, 8월)에 걸쳐 접수 및 선정·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.

#### O26.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?

- 사료공급(제조업 또는 도·소매 포함)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.
-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Q27. 사업대상자가 농·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?

### ○ 예.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·군과 농·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**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** 하셔야 합니다.
-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 협의를 하신 후 **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** 토록 한 후 관련 서류<sup>\*</sup>를 시·군과 농·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- \* 관련 서류: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,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,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
-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 받거나, 관련 서류를 시·군과 농·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<u>"용도외 사용(부당</u> 사용)"으로 간주하여 <u>대출금 조기회수, 위약금리 부과, 일정기간</u>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을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업(사료산업종 합지원 등)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.
-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아울러 본 기준은 '15~'18년도 대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### Q28.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-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(1억원 → 2억원) 하였고,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.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(2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 농신보 85%, 금융기관 15%)을 해 줍니다.
  - \* (사례)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,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,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.

- Q29.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요?
- 농신보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(외상값)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- 농신보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,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#### O30.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 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.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.
- Q31.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·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·군에서 선정·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?
- 곤란합니다.
- 농가당 지원한도를 관리하기 곤란해서 가장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마리수까지 검토해서 선정·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.(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)

#### Q32.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
-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된 설탕만 가능합니다.
- 식용으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설탕은 비록 꿀벌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정식 사료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.

- 가급적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토록 하시고, 설탕이 꼭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료공급업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품질의 설탕을 제조.판매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Q33. '19년도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?
-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.
- 선착순 대출임을 감안해서 사업신청 및 선정·추천, 심사·대출 등을 신속히 진행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사전에 농가에게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(선착순 대출 필요성은 Q15번 참조)
- O 다만, '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은 필요시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Q34. 각 시·도(시·군)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?
-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·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- Q35. 배정액을 3월(60%)과 6월(30%)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·추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?
- 정부의 세수확보 여건상 금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을 가급적 매월 균등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.
  - '19년 1분기 1,000억, 2분기 1,020억, 3분기 1,341.5억 배정계획

- 예산은 충분하나 배정된 자금이 일시 부족해서 대출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정액을 3월 (60%)과 6월(30%)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·추천하시라는 의미입니다.
- 그리고 가급적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이 아닌 선정·추천·통보 등을 모두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
#### O36. '19년도 예산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?

- '19년 예산은 '19.12.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, 개별 관할 시도/ 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### O37.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?

- OEM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이고,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, 추천 등은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.
- 즉, 한우조합연합회는 시.도의 역할을 수행하고, 참여 한우조합은 시.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  - \* 참여 한우조합(7개소) : 서울경기한우조합, 경기한우조합, 대전충남한우조합, 충북한우조합, 충남한우조합, 전북한우조합, 대구경북한우조합
- O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,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O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 연합회에 신청하시고,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- 다만,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,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Q38. 구제역,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-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(KAHIS)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·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, 시·군 담당자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 · 추천 통보서 발급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Q39.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O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(www.animal.go.kr)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